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국장
람	

제1437호 2019. 5. 10(금)

차 례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1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

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----- 1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-821호

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

「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. 5. 1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자치법규명

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개정이유

가정동 루원시티개발사업으로 「가정1동 행정복지센터」와 「가정2동 행정복지센터」가 매각되어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「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(제2조 관련)」 중 가정1동 및 가정2동 소재지 변경

구 분	소 재 지
가정1동	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1(가정동)
가정2동	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0(가정동)

4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32-560-4515, 팩스 032-560-2710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1. 제안이유

- 가정동 루원시티개발사업으로 「가정1동 행정복지센터」와 「가정2동 행정복지센터」가 매각되어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「구청 및 동청사 소재지(제2조 관련)」중 가정1동 및 가정2동 소재지 변경

구 분	소 재 지
가정1동	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1(가정동)
가정2동	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0(가정동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 -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- 가. 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.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
다.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(안)

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중 가정1동 및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위 치	관할구역
가정1동 행정복지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1(가정동)	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
가정2동 행정복지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0(가정동)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]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		[별표]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	
구 분	소재지	구 분	소재지
가정1동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(가정동)	가정1동	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1(가정동)
가정2동	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53번길 17(가정동)	가정2동	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0(가정동)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 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면·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(行政面)·행정동(行政洞)을 말한다. <개정 2009.4.1.>

의 건 제 출 서	
1. 자치법규명	
2.	성명(단체명/대표자)
	주 소
3. 의 건	
4. 기 타	
<p>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견 제출인 주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전화 :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성명 (서명 또는 인)</p> <p>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</p>	
비 고	<p>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

※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